

서 면 질 문 서

=====

질문의원명	채 인 목	소속위원회	기획경제
질문대상자	서울시립대학교 총장		
질문제목	민원 사항 관련		

<질문내용>

1. 환경조각학과 비리 및 학생부당 대우에 대해

- 환경조각학과 일부 교수들의 비리 및 학생 부당 대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.

- 환경조각학과 김모 교수는 ▶인체모델 인건비 유용, ▶하위권 강의수업 평가 강사 겸임교수 임용, ▶일부 수강생들에게 인격 비하, 강압, 폭언 등으로 학생들에게 자괴감, 모멸, 의욕상실 등의 악영향을 끼쳤고, 또한 같은 과 정모 교수는 ▶개인적 친분을 통한 강사 위촉, ▶강의 시간을 개인 신변잡기로 채우기, ▶실습장에 개인 작품 장시간 보관을 하는 등 교수들의 비리와 학생 부당 대우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접수되었음.

- 올해 환경조각학과의 한 학생이 해당학과 교수들의 비리와 학생부당 대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걸 학교 측은 알고 있는지?

- 민원 제기 사실을 학교 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있었는지?

- 환경조각학과는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“서양미술사” 과목을 강의하는 겸임교수의 논란으로 교수 교체가 있었는데,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판단하는지?

- 민원발생 내용의 사실일 경우, 향후 교수 징계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?

○ 시립대는 해당 학과의 민원 발생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해당교수의 징계 절차를 거쳐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바라며, 민원 처리에 대한 추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2.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

○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요구하는 등 평상시 교육태도도 좋지 못할뿐아니라 지나친 정치적 사안들을 수업 중에 언급하며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제보사항이 있음.

○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바라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.

1. 환경조각학과 비리 및 학생부당 대우에 대해

가. 학교 측은 알고 있는지?

나.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?

다.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?

라. 향후 징계 처리 절차는?

가. 학교 측은 알고 있는지?

- 해당 민원은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에 민원인 정보 미상(주소 기재)으로 접수된 것으로 교육부에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본교로 이첩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.

○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 접수 : '20.10. 4.

○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 이첩(→서울시립대학교) : '20.10. 6.

나.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?

- 민원 접수 후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위해 2차례 우편으로 민원 관련 사건경위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반송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

○ 1차 등기우편 발송('20.10.16) / 2차 일반우편 발송('20.11.13.)

- 해당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제1차 교원윤리위원회를 개최 (12. 8.)하였으며, 해당 교수에게 민원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과 2차 교원윤리위원회(12.29. 예정) 출석 요구를 결정하였습니다.
- 향후 진상조사 및 민원처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다.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?

-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라. 향후 교수 징계 처리 절차는?

- 진상조사 결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교수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(징계요구권자)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,
-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합니다.

작성 자	기관명 (부서명)	직 위	성 명
	서울시립대학교 (교무과)	과 장	윤 재 무
	☎ 6490-6110	교무행정팀장	유 장 원
	작성일 : 2020. 12. 9.		

2.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

가.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치 및 예방 방안 모색 바람

- 해당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제1차 교원윤리위원회를 개최 (12. 8.)하였으며, 해당 교수에게 민원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과 2차 교원윤리위원회(12.29. 예정) 출석 요구를 결정하였습니다.
-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예방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작성 자	기관명 (부서명)	직위	성명
	서울시립대학교 (교무과)	과장	윤재무
	☎ 6490-6110	교무행정팀장	유장원
작성일 : 2020. 12. 9.			